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13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2. 17. ~ 2023. 03. 02.(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유)프라이즌	120114-0002977	채권(예금)	₩48,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2-5, 404 호
2	(합)와이즈앤플라워	151213-0001849	채권(예금)	₩28,728,000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2, 1 층
3	(합)이훈특산물	150113-0008591	채권(예금)	₩41,04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53 번길 42, 1 층 6 호(운천동)
4	유한회사 동원	151114-0000825	채권(예금)	₩53,100,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 8길 20, 102 호(교현동, 충주오피스텔)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